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

The 106th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찰요



일시 : 2021년 9월 28일(화)

장소 : 한소망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PCK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차 례

제106회기 총회조직	1
교 세	3
제 106회 총회 주요결의	4
9월28일 본회의	4
제106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회의	11
총 회 임 원 회	11
총회 상임부, 상임위원회	17
총 회 특 별 위 원 회	31
총 회 별 도 위 원 회 , 정 기 위 원 회	36
총회 산하 재단 및 기관	38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

찰요

출석 : 총 69개 노회 중 69개 노회
목사 750명 중 725 명
장로 748명 중 719 명
합계 1,498명중 1,444 명
(총회 개회시)

I. 조직(2021. 12. 2. 현재)

1. 총회 임원회

총 회 장 : 류영모 목사(서울서북)	장로부총회장 : 이월식 장로(안양)
목사부총회장 : 이순창 목사(평북)	부 서 기 : 김한호 목사(강원)
서 기 : 조환국 목사(인천)	부회록서기 : 허요환 목사(서울강서)
회록서기 : 황세형 목사(전북)	부 회 계 : 김진호 장로(서울동)
회 계 : 전학수 장로(진주남)	
사무총장 : 김보현 목사(서울)	

2. 상임부

부 서	부 장	서 기	회 계
정 치 부	김성철 목사(서울서북)	정동천 목사(함 해)	길근섭 장로(대 전 서)
규 칙 부	김민수 목사(서울강북)	심태식 목사(전 북)	이동천 장로(대구동남)
재 정 부	장오표 장로(서울동북)	안병주 장로(영 주)	김용태 장로(영 등 포)
신학교육	정병주 목사(안 양)	신영균 목사(경 동)	최일남 장로(대 전 서)
재 판 국	양재천 목사(서울동)	황병용 목사(진 주)	오시영 장로(서울관악)
국내선교	박봉수 목사(서울관악)	임인채 목사(강 원 동)	양정석 장로(순 천)
세계선교	김정현 목사(서울강북)	김진욱 목사(인 천 동)	문채웅 장로(순 천)
교육자원	이기주 목사(울 산)	윤마태 목사(천안아산)	김재갑 장로(익 산)
사회봉사	도영수 목사(경 동)	서성구 목사(경 기)	이홍무 장로(충 주)
군경교정선교	이충일 목사(전 북)	방승필 목사(충 청)	강찬성 장로(영 등 포)
농어촌선교	김성철 목사(울 산)	김경호 목사(평 북)	문준섭 장로(군 산)

3. 상임위원회

위 원 회	위 원 장	서 기	회 계
고시위원회	장찬호 목사(서울서)	안영대 목사(대전)	이효겸 목사(인천)
감사위원회	박 훈 장로(서울동)	김성수 목사(전서)	조병국 장로(서울강북)
헌법위원회	오경남 목사(함해)	이태종 목사(서울강남)	이종세 장로(서울서)
평신도위원회	박동석 목사(서울강동)	강두성 목사(제주)	윤재인 장로(충청)
남북한선교위	최태순 목사(충남)	이동아 목사(부산동)	최성길 장로(인천동)
훈련원운영위	박석진 목사(포항)	권태구 목사(충주)	김성신 장로(순서)
이단사이비대책위	유 무 한 목사(서울서)	백용훈 목사(서울동북)	김기수 장로(전주)

4. 정기위원회

위 원 회	위 원 장	서 기	회 계
선거관리위	차주옥 장로(충주)	장승천 목사(대전서)	황병국 장로(경북)

5. 재단 및 기관

기 관 명	이 사 장	서 기 이 사	회 계 이 사
유 지 재 단	림형석 목사(안양)	공석초 목사(서울북)	윤남혁 장로(평남)
연 금 재 단	심길보 목사(서울강북)	김병옥 목사(대구동)	정병권 장로(광주동)
복 지 재 단	민경설 목사(서울서남)	조건희 목사(서울)	박경희 장로(서울강남)
실로암재단	김선태 목사(서울)	이순창 목사(평북)	
장 학 재 단	김영철 목사(서울관악)	이필산 목사(용천)	김종식 장로(서울동남)
문 화 법 인	손신철 목사(인천)	정기수 목사(서울강동)	
장로교출판사	김진옥 목사(인천동)	황형찬 목사(부산남)	김규환 장로(대전서)
한국기독교공보사	류영모 목사(서울서북)	양인석 목사(전북)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조재호 목사(서울서남)	주현신 목사(서울남)	여충호 목사(서울남)
손양원사업회	김의식 목사(영등포)	강점석 목사(여수)	방성환 장로(영등포)
한국교회연구원	채영남 목사(광주동)	김의식 목사(영등포)	신용식 장로(서울강남)

6. 인사 인준

- 1) 총회 사무총장 김보현 목사(신임)
- 2)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김운용 목사(신임)
- 3) 한국기독교공보사 사장 안홍철 목사(연임)
- 4)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 박창원 장로(신임)

II. 교 세 (2020. 12. 31. 현재)

번호	구분	통계수		증 감 (A-B)	증감율 (%)	비고
		2020년(A)	2019년(B)			
1	노회수	69	68	1	1.47%	
2	교회수	9,341	9,288	53	0.57%	
3	목사수	21,050	20,775	275	1.32%	
4	전도사수	2,547	2,796	-249	-8.91%	
5	교육전도사수	3,610	3,797	-187	-4.92%	
6	장로수	32,647	32,511	136	0.42%	
7	안수집사수	78,462	77,983	479	0.61%	
8	권사수	184,499	182,292	2,207	1.21%	
9	서리집사수	569,852	581,000	-11,148	-1.92%	
10	제직수(6,7,8,9)	858,506	869,830	-11,324	-1.30%	
11	세례교인수	1,615,710	1,674,221	-58,511	-3.49%	
12	전체교인수	2,392,919	2,506,985	-114,066	-4.55%	유아세례포함
13	결산액	1,308,993,959,484	1,415,077,887,260	-106,083,927,776	-7.50%	2020년도 경상수입 결산액

III. 제 106회 총회 주요 결의

〈 9월 28일 본 회의 결의 〉

1. 절차채택

서기 윤석호 목사가 제106회 총회 절차를 별지(회의안 11쪽)와 같이 보고하니 임의로 받기로 하다.

2. 총회임원 선거

가. 총회장 승계 공포

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 1항에 의거 현 부총회장 류영모 목사(서울서북노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장직을 자동승계함을 보고하니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이를 선포하다.

나. 부총회장 선거

1) 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목사부총회장 투표 결과 총투표수 1,475표 중 기호 1번 이순창 목사 895표, 기호 2번 정현교 목사 577표, 무효 3표로 이순창 목사가 과반수를 득표하였음을 보고하니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으로 이순창 목사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다.

2) 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장로부총회장 투표 결과 총투표수 1,475표 중 이월식 장로가 찬성 1,249표, 반대 223표, 무효 3표로 찬성 과반수를 득표하였음을 보고하니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으로 이월식 장로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하다.

다. 여타 임원 선거

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 6항에 따라 신임 총회장 류영모 목사가 추천한 여타 임원 명단을 발표하니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인준하여 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다음과 같이 총회임원 당선을 선포하다.

서 기 : 조환국 목사(인천)

부 서 기 : 김한호 목사(강원)

회 록 서기 : 황세형 목사(전북)

부회록서기 : 허요환 목사(서울강서)

회 계 : 전학수 장로(진주남)

부 회 계 : 김진호 장로(서울동)

3. 공천위원회 보고

공천위원장 객재욱 목사의 공천위원회 보고(별책)는 재판국과 감사위원회 공천(안)은
의의가 있으므로 다시 공천(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 총회 상임부, 위원회와 정
기위원회, 총회 산하기관 공천(안)은 임시보고로 받다.

4. 헌의위원회 보고

헌의위원장 류영모 목사의 헌의안 보고는 별지(회의안 35-67쪽과 추가보고서 3-8쪽)
와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5. 총회 임원회 및 총회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

총회장 류영모 목사와 서기 조환국 목사의 총회임원회 및 총회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
는 완전보고로 받다.

가. 청 원

- 1) 총회 규칙에 근거하여 총회 특별위원회는 15개로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
106회 총회시 존속 또는 신설이 허락되는 총회 특별위원회의 통폐합 및 조정을
총회 임원회에 일임해 주시기를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가 평화통일 및 북한선교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운
영 중인 통일선교대학원을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산하기관으로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3)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다음의 헌법해석 관련 해석 채택여부를 본 회의에서 결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총회장이 제출한 “행정재무처-8668 / 헌법 해석에 대한
재심의 요청(2021.7.6.)” -총회장이 송부한 “행정재무처-7157 / 헌법 해석에 대한
재해석 요청(2021.6.14.)” - 신학교육부장 민경운 목사가 제출한 “교육·훈련처
-1058 / 헌법 해석에 대한 재해석 요청(2021.6.3.)” 건은 삭제하기로 결의하다.
- 4) 제 106회 총회 상임부, 상임위원회 회의는 시간과 여타조건상 총회기간(1일)에 불
가하므로 총회 폐회후 10월 6일(수) - 10월 8일(금)까지의 일정으로 각 부,위원회
별로 순차적으로 총회본부 대강당, 소강당, 연수실에서 분산 회집하여 조직 구성
및 헌의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허락해 달라
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 결의하고 10월 6일 부회의 일시는 일부 조정하기로 하
되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5) 제 106회 총회 상임부, 상임위원회 회의가 총회 폐회후 10월 6일(수) - 10월 8일
(금)까지의 일정으로 회집하여 조직 구성을 하게되므로 제 106회 총회에 상정될
제 규칙 개정, 이단사이비 규정(지정), 신학대학교 총장 승인 청원, 헌법위원회의
헌법개정(안) 상정 등은 관례상 신임부장이 청원하였으나 이를 제 105회기 해당

부서장이 청원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 결의하다.

- 6) 총회 사무총장으로 김보현 목사를 인준해 달라는 건은 총투표수 1,270표 중 찬성 1,026표, 반대 203표, 기권 41표로 김보현 목사를 신임 총회 사무총장으로 인준을 결의하다.

나. 총회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

1) 총회주제연구위원회

가) 본 위원회 존속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2)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

가) 본 위원회 존속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3) 기독교학원위원회

가) 사립학교법재개정대책특별위원회 조직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4)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 건축위원회

가) 본 위원회 존속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나) 현재 본 기념관 건축이 완공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모금활동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106회기에 현 위원들을 3분의 2이상 연임해 주기를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5)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가) 본 위원회 존속 청원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6. 규칙부 보고

제 105회기 규칙부장 이명덕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가. 제 규정 개정 청원

- 1) 총회 규칙을 별지⑪, ⑭, ⑱과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제 8조, 제 21조, 제 40조는 만장일치로 개정 허락하고, 제12조 4항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 2) 총회 임원선거조례를 별지⑫, ⑮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개정 허락하다.
- 3) 한국기독교공보사 정관을 별지①과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제 18조, 제 36조는 만장일치로 개정 허락하고, 제 9조, 제 10조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다.
- 4) 총회문화법인 정관을 별지②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5)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을 별지③, ⑨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1)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 (2)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 (3) 학교법인 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 (4)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 (5)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 (6)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 (7)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 6) 국내선교부 내규를 별지④, ㉔과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7)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을 별지⑤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8) 총회군경교정선교부 경찰소방선교후원회 명칭 변경 및 내규를 별지⑥과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9) 고시위원회 조례를 별지⑦과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10) 총회유지재단 정관을 별지⑧과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제 5조(임원)에 총회장을 당연직 이사(7명)로 삽입하고 이사 16명으로 개정하는 것과 제 28조 개정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11)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 개정을 별지⑨, ㉔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총회연금재단과 대구애락원 관련 조항이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1년간 규칙부가 연구하도록 하다.
 - 12)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를 별지⑩, ㉔과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제 6조 1항 3)호는 국가법 관련 조항이고, 제 9조는 총회연금재단 관련 조항이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1년간 규칙부가 연구하도록 하고, 제 2조, 제 6조 1항 2)호와 2항, 제 10조 개정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13)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을 별지⑬과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개정 허락하다.
 - 14) 학교법인 대전기독교학원(한남대학교) 정관을 별지⑭, ㉔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15)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개정 및 기본재산 보통재산 변경을 별지⑰과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16)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정관을 별지⑳과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1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을 별지㉒와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 18)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을 별지㉔과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19) 총회연금재단 정관 및 연금규정, 시행세칙 개인대출규정 개정안을 별지 ㉔과 같이 개정해 달라는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1년간 규칙부가 연구하도록 하
다.

나. 제정 청원

1) 총회군경교정선교부 총회소방선교협의회 정관과 총회소방선교후원회 정관을 별
지㉕, ㉖)과 같이 제정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7. 신학교육부 보고

제 105회기 신학교육부장 민경운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가. 청원

1)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으로 김운용 목사를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
은 총투표수 1,297표 중 찬성 939표, 반대 334표, 기권 24표로 김운용 목사를
신임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인준을 결의하다.

8. 총회연금재단 보고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이사장 최성욱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가. 경과 및 사업보고 : 이사장 최성욱 목사의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732-737쪽과 266-268쪽)와 같이 받다.

9. 한국기독교공보사 보고

한국기독교공보사 이사장 신정호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가. 청원

1) 본보 제105회기 3차 정기이사회(2021.5.8.(목))에서 결의한 본보 안홍철 사장 연
임에 대하여 총회 인준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안홍철 목사를 한국기독
공보사 사장으로 인준을 박수함으로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10. 한국장로교출판사 보고

한국장로교출판사 이사장 남성현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가. 청원

1) 제105회 이사회에서 선임된 사장서리 박창원 장로에 대한 인준을 청원하오니 허
락해 달라는 건은 박창원 장로를 신임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으로 인준을 박수함
으로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11. 교회연합사업위원회 보고

교회연합사업위원장 김태영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청원

- 1)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교회연합사업기관 공천을 <별지>와 같이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3) 한국 교회 연합기관 대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이단과 금권 선거 문제를 일소하여 모든 교단이 참여하는 성숙한 한국 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2. 에큐메니칼위원회 보고

에큐메니칼위원장 류영모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청원

- 1) 본 위원회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본 위원회에 이첩된 “서울강북노회장 김준호 목사가 제출한 NCC, WCC 정체성에 관한 확실한 입장 정리와 도움이 되지 않을시 탈퇴해 달라는 건(행정재무처-7159호 / 2021.6.14.)”을 연구한 결과 WCC의 정체성과 교단의 입장을 정리한 “복음과 에큐메니칼 신앙 / 부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뿌리와 정체성”을 연구보고서로 발간하여 제출하니 “총회 에큐메니칼 정책의 지침문서”로 채택하여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3.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헌법개정위원장 김성철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청원

- 1) 헌법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헌법개정(안)의 헌법 제 2편 정치, 제3편 권징, 헌법시행규정 개정(안) 모두 각각 만장일치로 개정 가결하고 노회 수의 및 시행을 후속조치하도록 허락하다.
- 2) 헌법 제1편 교리 제3부 요리문답은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감안하여 존치하여 주시고, 헌법 제1편 교리 제7부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별지와 같이 채택하여 달라는 건과 이에 따른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 해설서 발간을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만장일치로 채택 가결하고 노회 수의 및 후속조치하도록 허락하다.

- 3) 제105회 총회 수임안건인 헌법 정치 제2편 제74조(노회원의 자격)에 관한 개정(안)은 1년간 더 연구하도록 청원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노회 내 균형발전과 노회원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연구위원회 구성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4. 헌법위원회 보고

제 105회기 헌법위원장 이진구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가. 청원

- 1) 헌법위원회가 제105회 총회에서 한 회기동안 연구하도록 허락받은 헌법개정(안)을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 헌법시행규정 제 16조 1의 5항(신설)은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하고 그 외 조항은 헌법 개정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연구하도록 하고 헌법개정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5.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

제 105회기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심상효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임시보고로 받다.

가. 청원

- 1) 다음 수임안건 및 이첩안건에 대한 조사보고 및 연구보고 결론을 채택해 달라는 건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 가) 에스라하우스 노우호 목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허락하다.
 - 나) 미주 세이연과 이인규 씨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허락하다.
 - 다) 이광복 목사의 요한계시록 해석과 종말론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연구결론 중 “본 교단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참여 금지를 권고하는 바이다.”로 수정하여 허락하기로 하다.
 - 라) 인터콥 선교회 재심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하다.
 - 마) 기독교신문 조사보고서는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하다.
 - 바) 이명범씨 조사보고서는 한국기독교공보사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게재사실 확인 후 해지하기로 허락하다.
 - 사) 황규학씨(전 로앤처치, 구 에클레시안) 조사보고서는 채택 부결되다.
 - 아) 이단사이비 처벌 규정 지침 보고서는 총회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일임하기로 하다.

16.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회 보고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장 류영모 목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완전보고로 받다.

가. 청 원

- 1) 제105회 총회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회의 활동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여전도회관 정상화 방안’을 보고, 청원하니 시행을 허락해 달라는 건은 채택 부결되다.
- 2) ‘여전도회관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7. 결의

제 106회 총회의 모든 미진안건 처리는 총회임원회에 위임해 달라는 청원은 허락하다.

〈제 106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회의 결의 / 총회 임원회 제106-1차, 2차, 2-1차 회의〉

〈 총회 임원회 〉

1. 서기 조환국 목사가 제출한 “제106회 총회 미진 안건 확인 및 처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다. (모든 미진안건 처리는 총회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함 / 폐회 직전 결의)
2. “제107회 총회 〈 2022. 9.20(화)-9.22(목) 〉 장소 결정 건”은 목사부총회장에게 검토를 일임하고 차후 총회임원회가 보고받은 후 결정하기로 하다.
3. “제106회 총회의 총회임원회 수임안건 처리 건”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 가. 제 103회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제 106회기 총회 특별위원회는 15개로 제한되므로 이번 제 106회 총회시 존속 또는 신설이 허락되는 총회 특별위원회의 통폐합 및 조정을 총회 임원회에 일임해 주시기를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 허락 결의 후속 조치건(총회임원회 보고시 결의)는 시행하기로 하되 각 위원회 통폐합 및 조정은 검토하기로 하고, 위원 선임은 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에게 일임하고 그 결과를 서기, 부회록서기가 정리하기로 하다.
 - 나. 한국 교회 연합기관 대통합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이단과 금권 선거 문제를 일소하여 모든 교단이 참여하는 성숙한 한국 교회 연합기관의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

는 건의 허락 결의 후속조치건(교회연합사업위원회 보고시 결의)은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하기로 하고 서기, 사무총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다. 헌법 제1편 교리 제3부 요리문답은 역사적, 신앙적 가치를 감안하여 존치하여 주시고, 헌법 제1편 교리 제7부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별지와 같이 채택하여 달라는 건과 이에 따른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 해설서 발간을 위한 연구위원회 구성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의 허락 결의 후속조치건(헌법개정위원회 보고시 결의)은 총회 별도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하다.

라. 제105회 총회 수임안건인 헌법 정치 제2편 제74조(노회원의 자격)에 관한 개정(안)은 1년간 더 연구하도록 청원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노회내 균형발전과 노회원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별연구위원회 구성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한 결의 후속조치건(헌법개정위원회 보고시 결의)은 헌법개정위원회에 분과로 조직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마. 이단사이비 처벌 규정지침 보고서는 총회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건(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시 결의)은 부회록서기, 부회계에게 맡겨서 검토하기로 하다.

바. 총회 임원회 자문위원회 청원 조정 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하다.

- 1) 총회주제연구위원회
- 2) 울릉도(독도)선교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
- 3) 연금제도발전위원회
- 4) 사학법재개정대책위원회
- 5) 총회 중재기도위원회

사. 제 106회기 총회 특별위원회 조정 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하고 인권위원회는 사회봉사부 분과로 구성하여 인권선교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단군상대책문제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분과로 구성하여 단군상문제 대책 업무를 진행하도록 요청하기로 하다.

(총회특별위원회가 제 106회기에 15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위원회간의 통폐합 및 조정을 총회 임원회에 일임 결의함 / 총회임원회 보고시 결의)

- 1) 교회연합사업위원회
- 2)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 3) 세대별특별위원회
- 4) 마을목회(치유와화해 생명공동체운동)위원회
- 5) 에큐메니칼위원회
- 6) 역사위원회
- 7) 교회동반성장위원회
- 8) 대사회언론소통위원회(명칭변경)

- 9) 이슬람선교및단군상대책위원회(명칭변경)
- 10) 동성애 대책 및 양성평등위원회(명칭 변경)
- 11) 교단신학위원회(신설)
- 12) 기후위기위원회(신설)
- 13) 선교유산회복위원회(신설)
- 14) 비온드코로나목회전략위원회(신설)
- 15) 디지털시대온라인교회연구위원회(신설)

아. 제 106회기 별도위원회 조정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하다.

- 1) 헌법개정위원회
- 2)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
- 3)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
- 4)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
- 5) 여전도회관수습위원회(명칭변경)
- 6) 메타버스목회연구위원회(신설)
- 7) 온라인시스템지원위원회
- 8) 출산돌봄위원회
- 9) 교리문답해설서발간연구위원회

자. “15개 특별위원회(9인), 5개 총회 임원회 자문위원회(9인), 별도위원회(9인 또는 15인) 위원 선임 건”은 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서기, 부회록서기가 정리하기로 하되, 전체 위원회의 50% 이상은 한국기독교공보에 위원 신청 공고를 게재하여 본인 신청 및 타인 추천을 통하여 접수, 심사하여 선임하기로 하고 공고(안) 작성은 서기, 부회록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4.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의 청원사항 처리 수입 안건”(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보고시 결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하다.

내용 : 총회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의 보고시 청원사항에 대하여 연구안으로 보고 받고 총회임원회에 일임한 사항임

가. 세계선교부 기구 개혁안을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에서 세계선교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다.

1) 하나의 ‘별도 기구’(산하 기관 등)에 역할과 기능,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생길 수 있는 선교 조직의 이원화와 갈등 구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기구’(산

- 하 기관 등)를 소위원회 체제로 조직하고,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감독과 지도하에 두어서 현재 총회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 2) 각 위원회의 임원 및 운영 위원은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 3) 세계선교부 안에 설치할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 (가) 타문화권선교위원회: 타문화권 선교에 관한 일, 타문화권 선교 전략 연구, 타문화권 선교 동원, 분쟁 조정
 - (나) 선교사교육·훈련위원회: 선교사 훈련(단기, 단기 전문인, 순회, 권역 임원, 다문화 등), 선교사 연장 교육
 - (다) 선교사인사위원회: 선교사 인선 및 인사 관리, 선교사 배치
 - (라)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현지 법인체 조직 관리, 선교사 재산 파악과 관리
 - (마)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선교지 내에 한인 교회와 소속 목회자 관련 사역
 - (바) 다문화선교위원회: 다문화선교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 (사) 세계선교연구위원회: 총회 세계 선교 정책 연구 및 개발
 - (아) MK사역위원회: 선교사 자녀 관련 사역
 - (자) 멤버케어사역위원회: 선교사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선교사 보험과 연금
 - 4) 각 위원회 위원은 총회 세계선교부원(실행위원 포함) + 파송교회 담임목사 + 전문위원(교수 및 선교사)를 동수(同數)로 조직한다.
 - 5)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3분의 1을 교체한다.(단, 1회 연임할 수 있으나 동일위원회에서는 불가능하다.)
 - 6)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는 필요 시 해당 업무를 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하고, 일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고 받고 인준한다.

나. 현행 전자투표 방식이 회원 확인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회원 확인 절차에 필요한 시스템을 50% 확충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시행하도록 하고 사무총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다. 현행 ‘정책 총회, 사업 노회’를 ‘정책 총회, 사업 권역, 목회와 행정 노회’로 변경하는 청원에 대한 시행 방안 연구의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 조치의 건은 현행 ‘정책 총회, 사업 노회’의 체제를 유지하고, 특별한 사업에 관하여 결의를 통해 권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정책 총회, 사업 노회, 총회훈련원’ 체제를 유지하고, 특별한 사업에 관하여 결의를 통해 권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허락하다.

라. 총회 혁신및기구개혁위원회에서 총회의 기구 역할에 대한 연구, 기구별 업무 조정, 인력 배치 등 총회 중장기 개혁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건은 총회의 기구 역할에 대한 연구, 기구별 업무 조정, 인력 배치 등 총회 중장기 개혁안 연구는 혁신및기구개혁위원회에서 연구를 수행하되, 총회본부 개혁이 시행되어 정착된 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 허락 결의 후속 조치의 건은 기구개혁 종합 진단 및 조직 평가를 위해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안에 총회본부 내·외부 전문가로 총회본부 기구개혁 평가단을 구성하여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총회본부 기구개혁 평가단을 15인으로 구성하여 제106회기에 1년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되 기구개혁 평가단은 구성하지 않고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가 연구하도록 하다.

마.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가 본회 설립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순교·순직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본 선교회가 행정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청원한 건은 총회 역사 기록 보존, 인물 및 사료 발굴, 교육과 기념사업 등 여러 업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 신앙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재의 총회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 역사위원회,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 등 관련 기관 통합과 창구 일원화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 역사위원회 등의 사업이 방대하고, 관련 기관 통합 시 이익집단화, 정치화의 위험성이 높으며 상호 견제가 필요하므로 현행대로 운영하되 전문위원을 위원 정수의 1/3로 확충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규칙에 준하여 전문위원은 3인이내로 선임을 시행하도록 하다.

바.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유럽-중동-아프리카 선교노회 전환 청원의 건은 선교노회 전환은 불가하다. 단, 선교 현장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유럽-중동-아프리카 선교노회 전환 청원건과 관련된 선교 현장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선교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권역 선교위원회 규칙’을 수정·보완하는 연구와 선교사 소속 노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고, 세계선교부가 헌법 제11장 노회 제73조 노회의 조직 4항에 있는 선교위원회와 관련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12장 총회 제84조 총회의 조직 2항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세계선교부에서 규칙 개정(안)과 헌법개정(안)을 연구하여 제 106 회기중에 총회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다.

사.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제도 연구 방안에 관한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1년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허락하다.

아.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노회 회원의 목사, 장로 비율 개선 방안에 관한 건은 각 노회별 목사, 장로 비율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노회 총대의 목사, 장로 비율을 동수로 하는 것은 교회와 노회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맞추는 것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노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 총대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했으므로 헌법개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자.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총회 방향(패러다임) 재설정 방안에 관한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별지>의 '2030 한국교회, 전인적 증언 공동체를 향하여'를 총회 정책 문서로 채택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참고문서로 허락하기로하고 총회 마을목회(치유와화해의생명공동체 운동10년)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차. 총회 부서 산하 기관 개혁을 위한 지침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에서 1년간 더 연구하도록 하다.

- 1) 총회 각 처별 산하 기관 총량제를 실시해 각 처별 산하 기관의 수를 20개로 제한한다. 단 현재 산하 기관 수는 인정하되, 5년(회기) 후까지 총량제 제한인 20개 이하로 조정하도록 한다.
- 2) 총회 부서 산하 기관 지정 청원은 총회 규칙부, 재정부, 청원 제안 부서가 한 회기 동안 협의하여 연구한 후 3개 부서가 만장일치로 총회 청원을 결의하여 총회에 산하 기관 지정을 청원하도록 한다.
- 3) 원칙적으로 총회는 총회 부서 산하 기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단, 총회 규칙부, 재정부, 청원 제안 부서 3개 부서가 협의하여 산하 기관 지정 청원을 할 때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5년(회기)을 넘길 수 없다.
- 4) 현재 총회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산하 기관의 재정 지원도 향후 5년(회기)까지

지원하며 5년(회기) 후 재정부와 산하 기관 소속 부서의 심사에 의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1차에 한해 지원을 연장하되, 지원 기한과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한다.

- 5) 총회 부서 산하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정관, 조직,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계획, 예산안과 결산을 산하 기관 소속 총회 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지도를 받으며 총회 보고서에 산하 기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 6) 총회 부서 산하 기관의 활동 범위나 성격이 개별 노회나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총회 부서 산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고, 산하 기관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해당 노회나 지역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 7) 유사한 성격의 총회 부서 산하 기관은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도록 한다.
- 8) 총회 각 부서는 소속 산하 기관이 임원을 조직할 때 정년으로 은퇴한 자가 임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카. 급변하는 시대에 총회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일관된 정책적 대응, 교단의 미래와 한국 교회 연합 운동을 이끌어 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므로 안정적인 직무 수행 및 총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총회장 제도를 상근 2년 전임제 총회장 제도(주 5일 총회 상근, 총회장 사례는 교회에서 지급)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제 106회 총회에서 관련 총회 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총회규칙에 준하여 시행하기로 하다.

타. 서부지역, 서울강북지역, 중부지역, 서울강남지역, 동부지역 5개 지역 순환제로 운영되는 부총회장 후보 지역 안배제에 관한 개혁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에서 연구하도록 허락하다.

〈 총회 상임 부, 상임 위원회 〉

1. 정치부

가. 헌의안 심의결과 보고

- 1) 대구서남노회장 정복돌 목사가 제출한 성서공회에서 임의로 성경을 번역하여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에서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2) 총회 농어촌선교부장 김광훈 목사가 제출한 총회 제정 농어촌주일을 현행 5월 마

지막주일에서 11월 셋째주일(추수감사주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에서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3) 군경교정선교부장 권위영 목사가 제출한 총회 제정 군선교주일을 현행 4월 넷째 주일에서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셋째주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에서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4) 국내선교부장 임현희 목사가 제출한 자비량 목회를 본 교단이 인정하는 목회형태의 하나로 허락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에서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나. 청원

- 1) 대전서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제출한 “용서 화해의 날” 제정을 위한 총회결의로 정부가 화해의 날을 법제화 해달라는 건은 정치부에서 한회기 계속 연구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2. 규칙부

가. 제 105회 총회 수입안전 처리 결과 보고 및 청원

- 1) 총회 산하기관 정관 지침으로 “총회 산하기관(단체 및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의 필수 포함 사항 지침(안)”을 총회 산하기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채택해 주시기를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한 건 후속조치(제 104회 총회 미진안전 처리 총회 임원회 제 104-2차 회의시 결의 - 총회 산하기관과선교지재산 및 일신기독병원연구위원회 청원사항)는 한 회기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는 “총회산하 기관(단체 및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정관의 필수 포함 사항 지침(안)”을 별지와 같이 결의하고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매년 단임으로 배정되어 선거업무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연도별 공천하여 원만한 선거관리 업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개정 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제 105회 총회 미진안전 처리 총회 임원회 제 105-1차 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보고시 결의)는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했다는 보고는 받다.
- 3) 전남노회장 김철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 미가입자는 총회부총회장과 총회 임원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하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는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했다는 보고는 받다.
- 4) 대구동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이 재단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년 10억으로 제한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하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는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했다는 보고는 받다.

- 5) 제101회 교단총회에서 평신도지도위원회를 ‘평신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산하 단체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명칭을 평신도‘지도’위원회로 변경해 달라는 건은 규칙개정 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제 105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 총회 임원회 제 105-1차 회의 평신도위원회 보고시 결의)는 “평신도지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허락하기로 하고 총회 규칙 개정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했으나 부결되었다는 보고는 받다.
- 6) 세계선교부 행정부 명칭을 ‘해외·다문화선교처’에서 ‘세계선교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개정 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제 105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 총회 임원회 제 105-1차 회의 세계선교부 보고시 결의)추가 통지(2021.3.2.)는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 7)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하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는 제 106회 총회에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청원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 8)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3조를 국가재난의 특별 상황하의 경우에는 각종 회의를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허락 결의 후속조치(9월 21일 제 105회 총회 총회임원회 보고시 결의)는 제 106회 총회에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청원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 9) 함해노회장 최낙규 목사가 제출한 총회 연금재단의 연금지급에 있어서 연령별 지급안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하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는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 10) 총회공천조례 중 총회연금재단 감사 공천을 전문인(공인회계사)으로 공천하도록 조례를 변경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제 105회 총회 미진안건 처리 총회 임원회 제 105-1차 회의 공천위원회 보고시 결의)는 공천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했으나 1년간 연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 11) 한 회기 연구하기로 한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제종실 목사가 제출한 “연금2020-0902 / 총회 규정 및 재단 정관 개정 청원(2020.9.4.)” 중 총회연금재단 정관 추가 개정(안) 후속조치는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5조 개정안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했으나 1년간 연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 12) 제 104회기 총회 규칙부 실행위원회가 한 회기동안 연구, 검토하여 제 105회 총회에 상정한 제 규칙, 정관 제정 및 개정(안)을 제 106회 총회에 상정하는 건은
 - ①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와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

답)”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였고

② “공천위원회 조례 제2조(구성과 조직)의 4. 소위원회”는 서울강북지역에 제주노회 편입과 서울강남지역에 서울강서노회(노회분립) 편입으로 수정하였고,

③ “총회연금재단 정관 및 연금규정, 시행세칙, 개인대출규정 개정”은 수정 보완하였으며,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했으나 1년간 연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나. 제 104회 총회 수입안건 처리 결과 보고 및 청원

1)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박웅섭 목사가 제출한 “임원선거조례 개정(안) 심의 및 104회 총회 안건 상정 협조요청(2019.8.27.)”은 한 회기 더 연구하기로 하고 제104회기 규칙부로 이첩해 달라는 허락결의 후속조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2) 서울북노회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규칙 유권해석 질의서(2019.8.5.)”는 선거법 개정 관련이므로 제104회기 규칙부에서 연구하도록 이첩해 달라는 허락결의 후속조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3) 서울노회장 이화영 목사, 전남노회장 정종채 장로가 제출한 총회 특별부서(헌법위원회, 재판국, 연금재단이사, 기독공보사) 공천제도를 변경해 달라는 건과 서울서남노회장 한요섭 목사가 제출한 공천제도를 변경해 달라는 건과 부산동노회장 남기룡 목사가 제출한 주요부서 및 기관 이사 파송에 대해 공천제도를 변경하여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모를 통해 공천하여 해당 부서에 전문적으로 식견이 있는 분을 공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과 경동노회장 도영수 목사가 제출한 총회 주요부서 조직을 획기적인 새로운 방안으로 연구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가 1년간 연구토록 한 결의 후속조치는 공천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4) 총회연금재단 공천에 관하여 현재 총회연금재단의 전체이사 10명은 총회파송이사 7명, 연금가입자회 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총회 공천위원회는 총회 파송이사 7명에 대하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공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해마다 지역별로 이사의 수가 불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총회파송이사를 5명으로, 총회 연금재단가입자회 이사를 5명으로 변경하여 지역별로 1명씩 균형 있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청원하오며, 아울러 비총대도 전문인으로 2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공천위원회 보고시 결의)는 총회연금재단 정관 중 관련된 정관 조항에 반영하였고 개정안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했으나 1년간 연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 5) 대전서노회장 이승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연금재단 운영을 개선해 달라는 건과 천안아산 노회장 김형제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과 순천노회장 배규 현 목사가 제출한 총회 연금규정 제26조 1항과 5항, 제27조 1항, 2항, 3항, 제28조, 제45 조의 4, 부칙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총회 연금재단과 규칙부와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처리 하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는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개정안에 반영하였고, 함해노회장 안 요환 목사가 제출한 총회 연금재단이 투자할 때(일반, 경매, 공매) 한 건당 투자금액을 200억원 이내로 제한해 달라는 건은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연금규정 개정안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했으나 1년간 연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 6) 부산남노회장 황형찬 목사가 제출한 공천위원장 선거도 임원선거 규칙 제2조 2항의 지역 안배제를 성문화하여 실시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가 1년간 연구토록 한 결의 후속조치는 공천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 7) 총회 회의 기간 조정(3일), 부·위원회 회의 활성화, 총회 보고 방법 변경, 총회 회의 제도 개혁 등을 1년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건은 합리적인 총회 회의 운영을 통해 총회 회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총회와 노회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 회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 중 “가) 회무”는 허락하되 (1)항은 규칙개정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기로 한 결의 후속조치(총회 규칙 개정)

(가) 회무

- ① ‘총회 회의 일정을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목요일 오후 6시까지 3일로 조정한다.’는 건은 총회 규칙 개정안을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 8) 국내선교부장 장승천 목사가 제출한 “국내선교부-320 / 국내선교부 규정 개정 및 산하기관 삭제 청원건(2020.7.24.)”은 총회 국내선교부 산하기관 중 ‘총회목회정보 정책연구소’는 제100회기 ‘총회한국교회연구원’으로 사업과 재정 및 연구소 제반 사항이 전부 승계되었기에 총회국내선교부 산하기관에서 삭제하기로 허락 결의하고 제106회 총회에 청원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다. 이첩안건 처리결과 청원

- 1) “행정·재무처-2819 / 청원 처리 및 의견 제출 요청(2021.3.12.)” - 총회산하기관 특별대책위원장 손달익 목사가 제출한 “행정·재무처-2344 / 전주예수병원 관련 청원 제출(2021.3.3.)”은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행정·재무처-2344 / 전주예수병원 관련 청원 제출(2021.3.3.)’에 근거하여 “총회 공천위원회 조례

제9조(역대 총회 공천 관련 결의 준용) 3. 법인기관 4) 총회 산하 정관이 있는 법인은 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공천한다”에 의해 전주예수병원에 파송하는 총회 파송이사 임기를 정관대로 4년으로 하기로 허락 결의하고, 제106회 총회에 청원했으나 1년간 연구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는 보고는 받다.

라. 한 회기 연구 청원

- 1) 세계선교부장 서화평 목사가 제출한 “해외·다문화선교처-1197 / 세계선교운영규정 개정청원(2021.6.9.)”은 제106회 총회에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건은 허락하다.
- 2)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총회공천위원회 조례 일부를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에서 한 회기 연구하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는 제106회 총회에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건은 허락하다.
- 3)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조, 제3조를 국가재난의 특별상황하의 경우에는는 각종 회의를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개정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허락 결의 후속조치(9월 21일 제 105회 총회 총회임원회 보고시 결의)는 제 106회 총회에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건은 허락하다.
- 4) 순천노회장 최수남 목사가 제출한 “순노 제102-151호 / 총회연금규정 개정 청원(안)(2020.10.14.)”은 제 106회 총회에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건은 허락하다.

마. 헌의안 심의 결과 보고

- 1) 전북노회장 양인석 목사가 제출한 총회 및 노회 산하 각 기관 이사의 만 70세 정년 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2) 광주노회장 박수일 목사, 광주동노회장 김영호 목사가 제출한 총회 순교자 추서 규정 제2조를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3) 순천노회장 송외천 목사가 제출한 총회장학재단 시행세칙 제13조(장학금 수혜 자격 박탈)를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4) 평남노회장 김봉성 목사가 제출한 총회 임원선거조례 중 제2장 제2조 5항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5) 함해노회장 송태승 목사가 제출한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조를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6) 함해노회장 송태승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가입 규정을 현재 15년 이상 납입해야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3. 재정부

가. 헌의안 심의 결과 보고

- 1) 서울남노회장 정민 목사가 제출한 총회 상회비를 20% 삭감해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 2) 전남노회장 김승익 목사가 제출한 총회 상회비 책정금액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나. 청원

- 1) 제106회 총회에서 허락된 각 부위원회, 산하단체의 모금 및 재정관련 모든 결의 사항은 재정부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제106회기 예산안을 별책과 같이 제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3) 제106회기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총회재무관리규정 제2장 21조에 의하여 계속해서 재정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4) 코로나19 감염증이 계속 확산됨에 따라 총회헌금 납입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에 따른 모금 대책으로 총회헌금 의무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기에 총회 총대 등록 시 1인당 10만원의 총대 등록비를 납부하도록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재정부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하다.
- 5) 전문위원으로 이식영 장로(안양) 박만길 장로(서울서) 정찬홍 장로(영등포) 3인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4. 신학교육부

가. 헌의안 심의결과 보고

- 1) 대구서남노회장 정복돌 목사가 제출한 신학대학교 총장의 정년을 70세에서 65세로 조정해 달라는 건은 신학교육부에서 한 회기동안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나. 청원

- 1)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하고자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진행하고 총회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다.
- 2) 제106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임원을 별지와 같이 복수 공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3) 제106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임원을 별지와 같이 복수 공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4) 제106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한일장신대학교 임원을 별지와 같이 복수 공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5) 제106회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임원을 별지와 같이 복수 공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6) 사임한 이하준 이사 후임으로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임원을 별지와 같이 복수 공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5. 재판국

가. 경과 보고

경과보고는 제 106회 총회 회의안 및 보고서(289 - 365쪽) 및 추가보고서 1(45 - 46쪽)와 같이 받다.

나. 헌의안 심의 결과 보고

- 1) 전북동노회장 임산규 장로가 제출한 연금재단 신한헬스케어 220억 부실 투자 손실 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민락동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건은 계속심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받다.

6. 국내선교부

가. 헌의안 심의결과 보고

- 1) 서울노회장 오세정 장로가 제출한 목회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목사 임직시 보다 엄격한 관리를 시행해 달라는 건은 국내선교부 성폭력예방연구위원회가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2) 대구동노회장 김상래 목사가 제출한 공유교회(Shared Church)를 허락해 달라는 건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건은 국내선교부가 연구보고한 “예배처소 공유제/공유예배당 제도 최종보고서”로 같음하여 시행하는 것을 허락하다.

나. 청원

- 1) 제106회기 국내선교부 사업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제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7. 세계선교부

가. 헌의안 심의결과 보고

- 1) 전북노회에서 총회로 제출하여 세계선교부로 이첩된 다문화선교사 제도 도입과 관련된 헌의안은 세계선교부 부원회의를 통하여 1년 동안 연구하도록 결의하였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나. 청원

- 1) 세계선교부는 총회본부 기구개편에 의해 국내 다문화사역 업무를 이관받아 담당하게 됨에 따라 관련 법규를 검토하던 중, 헌법 제27조에 개정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이에 헌법개정을 청원할 것을 결의(제104-8차 실행위원회(2020.8.6.))하였습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다문화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52만 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 대비 5%에 육박하는 수치로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해외의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다문화인들 역시 기독교 복음 선교의 중요한 대상입니다. 국내 다문화사역을 감당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헌법 조항(헌법 정치 제27조 6항)을 개정해달라는 건은 헌법개정사항이므로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 2)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해외 선교사들이 일시 귀국 및 철수를 권고 받아 귀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현장으로부터 입국을 허가 받기 어렵거나, 입국에 상당한 비용이 들거나, 혹은 백신 접종 등의 이유로 선교사들의 국내 체류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계선교부는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국내체류에 대해 총회 산하 각 후원교회와 소속노회에 아래와 같이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니 허락해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① 선교사가 선교현장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국내체류를 연장함에 대한 공식적인 허락
- ② 국내 체류가 길어짐에 따른 후원의 중단이 없도록 지속적인 후원 협조
- ③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선교관 및 게스트룸 이용 협조

- 3) 제106회기 세계선교부 사업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제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4) 콩고 자유대학교 재산권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가) 2년동안 총회재판국체 계류중인 콩고대학건 처리는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하다.

나) 콩고대학회복위원회 조직 구성은 총회세계선교부 산하위원회로 조직하여 진행하도록 하다.

- 5) 세계선교부는 선교사의 순교 및 순직 시 세계선교부가 추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총회에 청원할 것을 결의(제105-11차 실행위원회/2021.8.30.)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총회 파송 선교사의 순교 및 순직 시 추서 절차를 변경해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8. 교육자원부

가. 청원

- 1) 제106회기 사업운영계획서를 별지와 같이 제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2월 마지막주일을 총회 제정주일인 청소년주일로 시행하는 것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건은 정치부로 보내기로 하다.
- 3) 총회교육방송국 펍스PEBS(PCK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가칭)를 교육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9. 사회봉사부

가. 헌의안 심의결과 보고

- 1) 충주노회장 최창원 목사가 제출한 (가칭)대사회문제대책연구위원회(결혼상담소 운영)를 설치해 달라는 건은 이미 사회봉사부 내에 사회문제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으므로 인구감소문제에 대해 한 회기 연구하기로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2) 경동노회장 마홍락 목사가 제출한 동성에 차별금지법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저지를 위한 총회장 명의의 결의 및 성명서를 발표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2>은 이미 105회기 총회장 명의로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2021.7.12.) 한국교회총연합회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으므로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3) 경서노회장 정만익 목사가 제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대책수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성명서를 총회차원에서 선포해 달라는 건(제안설명 23)은 이미 105회기 총회장 명의로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2021.7.12.) 한국교회총연합회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으므로 철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4) 서울노회장 오세정장로와 서울북노회장 전일록 목사가 제출한 정부의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의한 예배 제한 조치는 국민의 평등권과 종교적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총회는 빠른 시일 내 적절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건(제안설명 1)은 이미 총회 차원에서 종무실 등을 통하여, 그리고 한국교회총연합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나. 청 원

- 1) 제106회기 사회봉사부 사업운영계획서를 별지와 같이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2021년도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 지원사업을 별지와 같이 선정하여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하고자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3)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감염병재난대응매뉴얼”을 총회정책문서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4) 기후위기 대응 총회 결의문을 별지와 같이 채택해 달라는 건과 기후및생태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조직 청원건은 결의문 채택은 허락하고 특별위원회 조직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0. 군경교정선교부

가. 청원

- 1) 제106회기 군경교정선교부 사업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제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2021년도 목사고시에 아래와 같이 합격한 군종사관후보생들이 97회 총회 결의대로 해노회에서 목사로 임직하여 군종목사로 파송함에 차질이 없도록 목사 안수해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합격자 4명>

11. 농어촌선교부

가. 청원

- 1) 제106회기 농어촌선교부 사업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제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총회 농어촌선교부 산하기관으로 동부지역 농촌선교센터를 조직하고자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2. 고시위원회

가. 경과보고와 2021년 목사고시 합격자 보고는 별지(보고서547-553쪽)와 같이 받다.

13. 감사위원회

가. 헌의안 심의 결과 보고

- 1) 충북노회장 박희동 장로가 제출한 총회 연금재단 외부 특별 감사 후 당사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건은 감사위원회 권한이 아니므로 총회임원회에 일임함이 가하다는 헌의안 심의 보고는 우선 총회 감사위원회가 총회 연금재단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 조치하기로 하다.
- 2) 전남노회장 김승익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 부실 투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건은 감사위원회 권한이 아니므로 총회임원회에 일임함이 가하다는 헌의안 심의 보고는 우선 총회 감사위원회가 총회 연금재단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 조치하기로 하다.

- 3) 남원노회장 김상섭 목사가 제출한 총회연금재단 부실투자와 관련하여 부실투자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은 감사위원회 권한이 아니므로 총회임원회에 일임함이 가하다는 헌의안 심의 보고는 우선 총회 감사위원회가 총회 연금재단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 조치하기로 하다.

14. 헌법위원회

가. 헌의안 심의 결과 보고

- 1) 서울동노회장 강형성 장로가 제출한 전도목사의 연임 청원 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제출을 면제(완화)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2) 부천노회장 안경근 목사가 제출한 교육목사 제도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 재고 및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3) 충북노회장 박희동 장로가 제출한 노회의 폐회 중에도 총회(노회) 세계선교부에서 요청한 선교사 파송 청원을 할 경우 '위임(담임)목사의 청빙청원'헌법 제29조 청빙의 승인)과 같이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승인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4) 부산남노회장 이동룡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13장 제91조 5항 5번(부동산 매매)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5) 부산남노회장 이동룡 목사가 제출한 노회 기소위원회 임기(헌법 권징 제56조 3항, 헌법시행규 정 제61조 1항) 불일치를 조정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6) 경안노회장 권헌서 장로가 제출한 제직회의 직무와 관련한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7) 경안노회장 권헌서 장로가 제출한 미조직교회의 당회원권에 관한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8) 총회 정치부장 이성주 목사가 제출한 총회헌법 정치 제73조 노회의 조직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9)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심상효 목사가 제출한 총회 헌법 교리 제2부 신조(12신조) 헌법 개정(일부 삭제 내용 복원) 청원으로 신조(12신조) 조항 중 삭제 변경된 1) 제12조항, 2) 승인식, 3) 각 조항의 표제들 및 4) 제2조항의 “진실하심과”를 조속히 복원시키는 조치로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하도록 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나. 청원

- 1) 전문위원으로 황형찬 목사(부산남), 조의환 목사(부산), 이병철 장로(부천) 3인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5. 평신도위원회

가. 청원

- 1) 제106회기 평신도위원회 사업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제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2) 여전도회주일(2022. 1. 16) : 본 교단 총회가 복음선교를 향한 여전도회의 열정과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제25회 총회 시(1936년)에 제정한 여전도회주일을 본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지켜주심으로, 여전도회의 선교·교육·봉사 연합사역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3) 연합회 가입 및 협력 : 본 교단 9,190여 교회 중 여전도회 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교회는 3,069여 교회에 불과하므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 지교회의 여전도회가 연합회에 가입하고, 계속교육원 교육과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4) 여성 총대 할당제 의무화 : 여성안수 법제화가 62년 만에 허락되었지만 지난 제105회기 전체 총대 1,500명 중 여성총대는 26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법제화 이후의 후속조치로서 모든 노회에서 여성총대 할당제를 의무화시켜주시어 본 교단의 양성평등 정책과 의지를 한국교회 여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청원하는 건은 권고사항으로 허락하고 여성총대 할당제 의무화는 평신도위원회가 더 연구하도록 하다.
- 5) 총회 양성평등위원회 분립 존속 : 제105회기 총회에서 ‘인권 및 평등위원회’로 통합된 ‘양성평등위원회’를 다시 분립하여 존속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본 교단 내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여성리더십 양성, 여성총대 할당제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오니 양성평등위원회를 분립하여 존속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6.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가. 청원

- 1) 제106회기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사업 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제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7. 훈련원운영위원회

가. 청원

- 1) 훈련원운영위원회 사업운영계획서를 별지와 같이 제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8.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가. 현의안 심의 결과 보고

- 1) 전북노회장 양인석 목사가 제출한 전광훈 씨에 대해 이단으로 규정해 달라는 건과 순천노회장 송외천 목사가 제출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의 '이단 사이비 성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달라는 건과 여수노회장 김봉채 장로가 제출한 전광훈 씨의 이단성에 대해 연구 조사해 달라는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2) 강원동노회장 유재석 목사가 제출한 김근주 목사에 대한 이단성을 조사해 달라는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3) 제주노회장 정구호 장로가 제출한 생명수교회의 이단성 및 정체성에 대하여 연구해 달라는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 4) 제주노회장 정구호 장로가 제출한 종교다원주의 및 손원영 전 교수의 이단성을 조사해 달라는 건과 함해노회장 송태승 목사가 제출한 예수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주장한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소속인 손원영 전교수의 이단성을 조사해 달라는 건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함이 가하다는 보고는 허락하다.

나. 총회결의 후속조치 보고

이명범씨 이단해지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공보사에 사과문을 게재확인 후 이단해지를 허락한 제106회 총회 결의 후속조치건은 2021년 10월 16일 한국기독교공보사에 전면 사과문 광고 게재를 확인하고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 총회 특별위원회 〉

1.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가. 청원건 1)항부터 13)항까지는 연구안으로 보고로 받고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14)항은 헌법개정 사항이므로 헌법위원회로 보내기로 하다.

1)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계선교부 기구 개혁안을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나의 ‘별도 기구’(산하 기관 등)에 역할과 기능,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생길 수 있는 선교 조직의 이원화와 갈등 구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기구’(산하 기관 등)를 소위원회 체제로 조직하고,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감독과 지도 하에 두어서 현재 총회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나) 각 위원회의 임원 및 운영 위원은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서 임명한다.

(다) 세계선교부 안에 설치할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타문화권선교위원회: 타문화권 선교에 관한 일, 타문화권 선교 전략 연구, 타문화권 선교 동원, 분쟁 조정

② 선교사교육·훈련위원회: 선교사 훈련(단기, 단기 전문인, 순회, 권역 임원, 다문화 등), 선교사 연장 교육

③ 선교사인사위원회: 선교사 인선 및 인사 관리, 선교사 배치

④ 선교지재산관리위원회: 현지 법인체 조직 관리, 선교사 재산 파악과 관리

⑤ 선교지한인교회위원회: 선교지 내에 한인 교회와 소속 목회자 관련 사역

⑥ 다문화선교위원회: 다문화선교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지원

⑦ 세계선교연구위원회: 총회 세계 선교 정책 연구 및 개발

⑧ MK사역위원회: 선교사 자녀 관련 사역

⑨ 멤버케어사역위원회: 선교사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선교사 보험과 연금

(라) 각 위원회 위원은 총회 세계선교부원(실행위원 포함) + 파송교회 담임목사 + 전문위원(교수 및 선교사)를 동수(同數)로 조직한다.

(마)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매년 3분의 1을 교체한다.(단, 1회 연임할 수 있으나 동일 위원회에서는 불가능하다.)

(바)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는 필요 시 해당 업무를 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하고, 일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보고 받고 인준한다.

3) 현행 전자투표 방식이 회원 확인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회원 확인 절차에 필요한 시스템을 50% 확충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현행 ‘정책 총회, 사업 노회’를 ‘정책 총회, 사업 권역, 목회와 행정 노회’로 변경하는 청원에 대한 시행 방안 연구의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현행 ‘정책 총회, 사업 노회’의 체제를 유지하고, 특별한 사업에 관하여 결의를 통해 권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총회 혁신및기구개혁위원회에서 총회의 기구 역할에 대한 연구, 기구별 업무 조정, 인력 배치 등 총회 중장기 개혁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건은 총회의 기구 역할에 대한 연구, 기구별 업무 조정, 인력 배치 등 총회 중장기 개혁안 연구는 혁신및기구개혁위원회에서 연구를 수행하되, 총회본부 개혁이 시행되어 정착된 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 허락 결의 후속 조치의 건은 기구개혁 종합 진단 및 조직 평가를 위해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 안에 총회본부 내·외부 전문가로 총회본부 기구개혁 평가단을 구성하여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총회본부 기구개혁 평가단을 15인으로 구성하여 제106회기에 1년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가 본회 설립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순교순직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본 선교회가 행정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일원화시켜 주시기를 청원한 건은 총회 역사 기록 보존, 인물 및 사료 발굴, 교육과 기념사업 등 여러 업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 신앙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현재의 총회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 역사위원회,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총회 순교자기념선교회 등 관련 기관 통합과 창구 일원화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한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 역사위원회 등의 사업이 방대하고, 관련 기관 통합 시 이익집단화, 정치화의 위험성이 높으며 상호 견제가 필요하므로 현행대로 운영하되 전문위원을 위원 정수의 1/3로 확충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유럽-중동-아프리카 선교노회 전환 청원의 건은 선교노회 전환은 불가하다. 단, 선교 현장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는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유럽-중동-아프리카 선교노회 전환 청원 건과 관련된 선교 현장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선교부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권역 선교위원회 규칙’을 수정·보완하는 연구와 선교사 소속 노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고, 세계선교부가 헌법 제11장 노회 제73조 노회의 조직 4항에 있는 선교위원회와 관련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12장 총회 제84조 총회의 조직 2항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원로 목사, 원로 장로 제도 연구 방안에 관한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1년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노회 회원의 목사, 장로 비율 개선 방안에 관한 건은 각 노회별 목사, 장로 비율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노회 총대의 목사, 장로 비율을 동수로 하는 것은 교회와 노회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맞추는 것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노회의 형편에 따라 노회 총대 수를 정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총회 임원회에서 이첩한 총회 방향(패러다임) 재설정 방안에 관한 건은 1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결의 후속조치의 건은 <별지>의 ‘2030 한국교회, 전인적 증언 공동체를 향하여’를 총회 정책 문서로 채택하여 줄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총회 부서 산하 기관 개혁을 위한 지침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회 각 처별 산하 기관 총량제를 실시해 각 처별 산하 기관의 수를 20개로 제한한다. 단 현재 산하 기관 수는 인정하되, 5년(회기) 후까지 총량제 제한인 20개 이하로 조정하도록 한다.

(나) 총회 부서 산하 기관 지정 청원은 총회 규칙부, 재정부, 청원 제안 부서가 한 회기 동안 협의하여 연구한 후 3개 부서가 만장일치로 총회 청원을 결의하여 총회에 산하 기관 지정을 청원하도록 한다.

(다) 원칙적으로 총회는 총회 부서 산하 기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한다. 단, 총회 규칙부, 재정부, 청원 제안 부서 3개 부서가 협의하여 산하 기관 지정 청원을 할 때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최대 5년(회기)을 넘길 수 없다.

(라) 현재 총회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산하 기관의 재정 지원도 향후 5년(회기)까지 지원하며 5년(회기) 후 재정부와 산하 기관 소속 부서의 심사에 의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1차에 한해 지원을 연장하되, 지원 기한과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한다.

(마) 총회 부서 산하 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정관, 조직,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 계획, 예산안과 결산을 산하 기관 소속 총회 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보고하고 지도를 받으며 총회 보고서에 산하 기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바) 총회 부서 산하 기관의 활동 범위나 성격이 개별 노회나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총회 부서 산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고, 산하 기관으로 지정되었더라도 해당 노회나 지역으로 이관하도록 한다.

(사) 유사한 성격의 총회 부서 산하 기관은 지속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도록 한다.

(아) 총회 각 부서는 소속 산하 기관이 임원을 조직할 때 정년으로 은퇴한 자가 임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12) 급변하는 시대에 총회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일관된 정책적 대응, 교단의 미래와 한국 교회 연합 운동을 이끌어 갈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므로 안정적인 직무 수행 및 총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총회장 제도를 상근 2년 전임제 총회장 제도(주 5일 총회 상근, 총회장 사례는 교회에서 지급)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기로 하다.
- 13) 서부지역, 서울강북지역, 중부지역, 서울강남지역, 동부지역 5개 지역 순환제로 운영되는 부총회장 후보 지역 안배제에 관한 개혁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행정 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지만 무리한 행정 소송으로 인하여 교단 업무를 총괄하는 총회장 업무 수행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행정 소송과 관련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총회장 직무 수행을 위하여 총회장이 행한 행정행위(형사 사건 제외)에 대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 개정 연구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세대별위원회

- 가. 계속적 연구 연속성을 위해 본 위원회와 위원들은 모든 연구를 마칠때까지 계속 존속시켜 주시기를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3. 마을목회(치유와화해의생명공동체운동10년)위원회

-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4. 역사위원회

-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나. 총회 한국기독교사적 제41호 ‘항일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 기념관’, 제41-1호 ‘주기철 목사 생가’, 제42호 ‘하회교회(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마을 기념교회)’, 제43호 ‘대장교회 최초 예배당 터’ 와 총회 한국기독교유물 제1호 ‘안동교회 학습인명부’, 제1-1호 ‘안동교회 세례인명부’, 제1-2호 ‘안동교회 유아세례인명부’, 제2호 ‘안동교회 당회록 1권(1913~22년)’, 제2-1호 ‘안동교회 당회록 2권(1922~26년)’, 제2-2호 ‘안동교회 당회록 3권(1926~32년)’, 제2-3호 ‘안동교회 당회록 5권(1941~54년)’, 제2-4호 ‘안동교회 당회록 6권(1954~64년)’, 제3호 ‘안동교회 제직회록 1권(1924~33년)’, 제3-1호 ‘안동교회 제직회록 2권(1933~41년)’, 제3-2호 ‘안동교회 제직회록 4권(1952~56년)’, 제3-3호 ‘안동교회 제직회록 5권

(1956~69년)', 제4호 '계월교회 교회 중', 제5호 '계월교회 레비록(1909년)', 제6호 '계월교회 성찬 분증기', 제7호 '계월교회 교회 회계용 주판'에 대한 지정 인준과 총회장의 사적지 및 유물 지정 공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5. 교회동반성장위원회

-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나. 2022년 교회동반성장사업지침 3차3개년(2022-2024)을 별지와 같이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6. 언론홍보 및 커뮤니케이션위원회

-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나. 본 위원회 명칭을 '미디어선교위원회'로 변경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7. 이슬람 및 단군상대책위원회

-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나. 교회학교 학생들 교육을 위한 이슬람 대책 영상 제작 예산 7,000,000원, 지역별 이슬람대책사업 예산 12,000,000원, 단군상 문제 대책 사업을 위한 예산 7,500,000원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8.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건축위원회

-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9. 인권 및 평등위원회

-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나. 평등위원회는 기존의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0. 동성애 및 젠더대책위원회

-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11. 재난위기대처위원회

- 가. 재난위기대처위원회의 존속청원은 하지 않으며 사회봉사부 재난관련 업무에서 계

- 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나. 총회재난봉사단 가입 및 운영지침을 총회정책문서로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2. 화해조정전권위원회

- 가.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874-881쪽과 추가보고서 270쪽)와 같이 받다.

13. 코로나19미래전략위원회

- 가.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882-884쪽)와 같이 받다.

〈 총회 별도위원회 〉

1. 7개신학대학교구조조정위원회

- 가. 7개신학대학교구조조정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 나. 7개신학대학교구조조정위원회에서 한 회기 동안 연구한 “7개신학대학교구조조정 제안서”를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신학교육부에 참고문서로 보내기로 하다.

2. 순교순직자심사위원회

- 가. 故 이상원 과장(1970.9.24.~2020.9.22.)을 총회 순직자(제9호)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나. 故 이신욱 목사(1931.3.16.~1971.4.14.)를 총회 순직자(제10호)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다. 故 권중운 안동교회 기독청년면려회 초대 회장(1900.2.3.~2027.1.30.)을 총회 순직자(제11호)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 라.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3.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 가.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903쪽)와 같이 받다.

4.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

가.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904-905쪽)와 같이 받다.

5. 서울노회유지재단특별대책위원회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확실함을 근거로 협상분과에서 추진하는 “압류등기 말소(또는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소송의 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다. “압류 등기 말소(또는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 소송의 건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 1,650만 원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6. 총회연금재단대책위원회

가. 본 위원회의 존속을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다.

7. 서울서남노회분립위원회

가.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916-931쪽)와 같이 받다.

〈 총회 정기위원회 〉

1. 통계위원회

가. 본 위원회 위원을 3년조로 개선토록 총회 규칙을 별지와 같이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규칙개정사항이므로 규칙부로 보내기로 하다.

2. 선거관리위원회

가.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691-698쪽과 추가별지)와 같이 받다.

3. 공천위원회(추가)

가. 공천위원장 광재욱 목사의 공천위원회 보고는 1항 상임 부, 위원회 공천 변경은 별지와 같이 받고, 미진안전인 재판국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재공천(안)은 재수정하여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임시보고로 받다.

나. 공천위원장 광재욱 목사의 공천위원회 보고는 감사위원회 공천은 별지와 같이 받고, 재판국에 대한 공천(안)은 수정하여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임시보고로 받다.

다. 공천위원장 곽재욱 목사의 공천위원회 보고는 재판국에 대한 공천(안)은 3년
조 오경환 목사 공천에 한해서 받지 않고 총회임원회가 공천을 수정하여 확정
하기로 하고 완전보고로 받다.

〈 총회 산하 재단 및 기관 〉

1. 총회유지재단

가. 사무국장으로 김정식 장로를 연임하기로 선임했다는 보고는 총회규칙부에 선임 결
차를 질의하여 규칙부 해석대로 처리하기로 하다.

2. 총회연금재단

가. 법인 정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34기 예산(안)을 제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나. 연금재단 설립일(1987.12.14.)인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총회연금재단주일’로 지
정해 총회산하 전국 교회 성도들이 함께 재단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
록 청원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로 보내기로 하다.

3. 한국기독교공보사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738-745쪽)와 같이 받다.

4. 한국장로교출판사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746-754쪽)와 같이 받다.

5.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718-731쪽)와 같이 받다.

6. 총회문화법인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755-763쪽)와 같이 받다.

7. 총회장학재단

가. 총회장학재단의 활발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후원교회 모집이 필요함으로 전국 교회
에 모금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8. 지구촌의료개발기구

- 가. 지구촌의료개발기구의 제 106회기 사업운영계획서를 별지와 같이 제출하니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9. 한국교회연구원

-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794-800쪽)와 같이 받다.

1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 가. 경과보고는 별지(보고서 764-768쪽)와 같이 받다.

11.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 가. 2021년 <드라마 손양원> 전국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총회에 드라마 제작비 5,000,000원 보조사업(2021년 여수시 우수문화보조사업으로 보조금 20,000,000원을 지정해 주어서 법인에서는 2021년 11월 전국공연을 준비 중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을 청원하는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 나. <만화 손양원>을 추가 발간하여 전국 교회에서 판매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다.

12. 대구애락원

- 가. (재)대구애락원 원생자활정착지원사업의 승인과 기본재산 처분 사용 승인 청원건은 본회의에 청원하여 승인 결의해야 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총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검토하기로 하다.

13. 전주예수병원

- 가. 경과 및 사업보고는 별지(보고서 801-803쪽)와 같이 받다.